

부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

1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8. 5. 28. ~ 6. 8. [9일간]
- 감사인원 : 14명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가. 분야별 지적 건수

구분	인사·복무	입시·학사	예산·회계	산단·연구비	시설	계
지적건수	14	16	10	14	4	58

나.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【인사·복무】		
1. 근무지 무단이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23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,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未공제 보수 합계 2,107,910원 부당 수령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58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징계(1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986,520원과 보수 1,121,390원 합계 2,107,910원을 000으로 부터 회수하여 부경대학교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2. 근무시간 및 당직 근무 중 학위과정 무단 수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 수강 (74.5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未공제 보수 합계 5,479,180원 부당 수령(교직원 6명) ○ 당직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대학원 강의 수강(총15회) 및 수업시간 중복 초과근무수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징계(2명) ○ 경징계(1명) ○ 경고(3명) ○ 주의(6명) ○ 시정(회수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>합계 882,300원 부당 수령</p> <p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58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, 제24조, 국가공무원 복무규칙(총리령) 제17조 제1항,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15조, 제16조, 제17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지급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합계 882,300원을 000(583,230원), 000(299,070원)로부터 회수하여 부경대학교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000등 2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 바람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지급 받은 연가보상비 및 보수 합계 5,479,180원을 000등 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부경대학교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3. 근무상황 조작.보수(수당) 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병가를 진단서 병가로 근무상황부 조작 및 既결재처리 된 일반병가를 무단 취소한 후 보수 및 수당 합계 1,670,050원 부당 수령 <p>【부경대학교 취업규칙 제4조, 제11조, 제13조, 제21조, 제4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문책, 징계, 해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0대학 대학회계직 000에 대해 부경대학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'문책(징계, 해고)'하기 바람 ○ 주의(4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급 휴가보상비, 보수 및 시간외수당 합계 1,671,050원을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부경대학교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4. 연구년 교원 선발 부적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업적 미달 등으로 연구년 교원 선발에서 탈락한 교원 19명을 연구년 교원으로 추가 선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65조, 제66조, 67조, 부경대학교 교원 연구년 운영지침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9명) ○ 주의(3명)
5. 전임교원 신규채용 기초심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초빙분야가 동일하고, 교원 충원사유 및 채용분야가 동일하며, 신임 교원이 담당할 교과목 및 지원자의 심사자료가 모두 동일한데도 2014학년도 1학기에는 “적격”으로 평가하고, 2학기에는 “부적격”으로 평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
6.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성적평정시 장관표창 등을 받은 2명에게 실적 가점 未부여 및 신분상 처분을 받은 8명 중 6명에게 감점 未부여, 1명은 기준보다 많게, 1명은 기준보다 적게 감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7조, 제29조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요령(교육부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5명) ○ 주의(1명)
7. 하부조직 과다 설치.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립학교 설치령」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부조직 설치.운영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립학교 설치령(대통령령) 제9조 별표 6, 별표 8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-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부조직을 설치.운영하기 바람. 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혁신행정담당관) -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하부조직을 설치.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
8.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견책’ 처분을 받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는데 필요한 경력에 6개월이 미달됨에도 조기 선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2항, 제32조, 제35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9. 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未조회 . 未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원면직 신청자 94명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자 未조회 · 未확인 및 채용예정자 18명에 대한 비위면직 여부 未조회 · 未확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舊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(2016. 8. 31. 폐지)제3조, 제4조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2016. 8. 31. 시행) 제5조, 제6조, 비위면직(파면·해임)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8명) ○ 주의(6명)
10. 징계혐의자 출석 통지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기준일보다 2일 지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
11. 전임교원 타교 출장 복무 未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11명이 타 대학 출장시 근무상황 未처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64조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 제10장, 제11장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11명)
12. 외부강의 등 未신고 및 복무 未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22명이 외부강의 출장 시 총장에게 未신고 및 복무 未처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1명) ○ 주의(21명)
13. 복무 未처리 공무외 국외여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13명이 소속대학장의 허가 등 복무처리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법 제58조, 부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 ○ 주의(10명)
14. 未허가 겸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직원 5명이 총장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2개 기관에서 업무 겸직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명)
【입시·학사】		
15. 국외 타 대학 학점인정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'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*(유럽통합학점)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학점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>*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</p> <p>【부경대학교와 타 대학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3조, 국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】</p>	<p>- 국외대학 파견 교환 학생의 학점인정은 「국외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기준」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</p>
<p>16.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</p>	<p>○ 평생교육원은 총17개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 · 운영하면서 교육부 未보고</p> <p>【평생교육법 제30조,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,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】</p>	<p>○ 경고(6명)</p> <p><별도조치> (평생학습정책과)</p> <p>○ 통보</p> <p>- 신규개설 평생교육과정 미보고 현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
<p>17. 국가교육근로장학 사업(장애학생도우미) 장학금 지급 부적정</p>	<p>○ 학생 5명이 장애학생과 동일과목 수강이 아닌 교과목 수업시간 중 근로한 54시간에 대해 근로 장학금 432,000원 지급</p> <p>【한국장학재단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'15~'17)】</p>	<p>○ 경고(6명)</p> <p>○ 통보</p> <p>-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장학금을 수령한 000 등 학생 5 명에 대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○ 통보(한국장학재단)</p> <p>- 국가교육근로장학금 (장애학생도우미) 부적정 지급사례를 통보하니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람</p>
<p>18. 증빙자료 未제출 성적정정 등 성적관리 부적정</p>	<p>○ 교원 20명이 증빙자료 첨부 없이 성적정정을 신청한 후 학생들의 성적 정정, 성적정정에 따라 성적등급 비율 초과</p>	<p>○ 경고(1명)</p> <p>○ 주의(21명)</p> <p>○ 통보</p> <p>- 【붙임1】현황의 성적정정 적정성 여부를 검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【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8조, 부경대학교 2015학년도 교육과정】	도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
19. 영어능력우수장학금 지급 부적정	○ 교수 2명이 TOEIC 기준 성적에 미달한 학생 2명을 영어능력우수장학금 대상자로 추천 【대학원 장학금 관리지침, 2015~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계획】	○ 경고(6명)
20. 학점인정 대체 자격 부적정 부여 등	○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'MOUS' 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【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】	○ 기관경고
21. 성적평가자료 未보존	○ 교수 2명이 '관광경영현장실습' 교과목 학생 38명의 성적평가자료 未보관 【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1조】	○ 경고(2명)
22. 현장실습 대상학생 선정 부적정	○ 2015~2017학년도까지 현장실습 대상이 아닌 학생 65명을 선정하여 현장실습 실시 【현장실습 운영 매뉴얼(교육부, 2013), 부경대학교 현장실습 지침】	○ 경고(1명)
23. 현장실습 계약 부적정	○ 2015~2017학년도까지 299개 산업체와 현장실습 계약 지연 체결 및 67개 산업체와 현장실습계약 未체결 【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,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】	○ 기관경고 ○ 경고(3명) ○ 주의(1명)
24. 현장실습 현장 지도 未실시	○ 교원 6명이 현장실습생 120명에 대해 현장지도 未실시 【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고시 제2017-115호) 제15조 제4항, 부경대학교 현장실습 지침】	○ 경고(6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25. 현장실습생 상해 보험 등 未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 ~ 2017학년도까지 학생 1,221명의 현장실습 상해보험 등 未가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(교육부고시 제2017-115호) 제16조,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(교육부, 2013), 부경대학교 인턴십 및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운영세칙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학부(과)별로 개설·운영 되는 현장실습을 통합 관리하는 등 상위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 하기 바람
26. 명예교수 강의 연한 未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명예교수 3명이 총장의 강의 연한 연장 승인 없이 강의 담당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부경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7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4명)
27. 전임교원 책임 교수시간 운영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교수 000에게 2017학년도 책임교수시간 11시간 미달 배정 및 정년퇴직 예정 교수 등 5명에게 책임교수시간 1~3시간 미달 배정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, 부경대학교 학칙 제5조 제2항, 부경대학교 학부 교과목 개설 및 수업운영 지침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주의 ○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교수시간 미달사례 발생시 보충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
28.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20명이 기준 출석시수에 미달한 학생 29명에게 해당 과목 성적 부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부경대학교 학칙 제59조 제2항, 부경대학교 학사 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28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0명)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0 등 학생 29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'F'학점으로 처리하기 바람(단, 201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실용영어회화(II) 000학생은 미이수(F)처리하기 바람)
29. 민간자격 표시 의무 未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3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의무 未준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자격기본법 제33조,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6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30. 보강 未 실시 및 초과강의료 부적정 수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원 32명이 결강한 92개 과목에 대해 보강계획서 未 제출 및 보강 未 실시 ○ 교원 27명이 미보강 시간(218)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5,750,000원 부적정 수령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부경대학교 학사학위 운영 규정 제15조 제4항,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2명) ○ 주의(30명) ○ 시정(회수) <p>-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 강의료 합계 5,750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</p>
【예산·회계】		
31. 타 비목 업무추진비 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과대학 행정실 운영비 등 7개 사업의 ‘일반 수용비’, ‘연구개발비, 임차료’ 등을 ‘업무추진비’로 전용(13,816천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2015학년도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(2015. 8.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5명)
32. 공간사용료 未 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8개 연구소와 사업단이 초과공간 사용에 따라 부과된 공간사용료 未 납부(21,259천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제4조, 제6조 제1항, 제9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9명) ○ 시정(회수) <p>- 공간사용료 합계 21,259천원을 사용자들로부터 납부 받아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p>- 공간사용료 미납부 사용자에게 대하여 행·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기 바람</p>
33. 보직수행경비 등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대상이 아닌 교원 41명에게 보직수행경비 및 직책수행경비 515,187,380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<p>-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기 바람</p> <p>- 향후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직책수행 경비를 지급하기 바람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 align="center">【국립학교설치령(대통령령) 제15조,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, 2015~2018)】</p>	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통보(국립대학정책과 . 산학협력정책과) - 부적정하게 보직수행경비 등을 지급한 사례를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<p>34. 발전기금회계 지원금 대학회계 未전출 및 직접사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영대학 등 6개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은 재단법인 부경대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120,291천원을 대학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직접 사용 <p align="center">【국립학교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3조, 제25조, 국립학교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- 향후 발전기금회계 재원을 지원받을 경우 대학회계에 전출한 후 집행하기 바람 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통보(국립대학정책과) - 발전기금회계 재원을 지원받고도 대학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<p>35. 발전기금 기부금 관리 부적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재단이 관할청인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승인없이 기부금 합계 6,796,158,667원을 보통재산으로 관리 <p align="center">【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·제2항, 재단법인 부경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6조 제2항】</p>	<p><별도조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통보(부산광역시 남부 교육지원청) - 재단법인 부경대학교발전기금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<p>36.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이용료 未징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수 2명으로부터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이용료 27건 3,521천원 未징수 <p align="center">【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5조 제1항·제2항, 제8조 제3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6명) ○ 시정(회수) - (주)000공업 관계자 등 11명으로부터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이용료 합계 3,521천원을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	조치하기 바람
37. 국고(대학회계) 지연 납입 등 수입금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수입금 국고(대학회계) 세입처리 지연 (2,092건, 합계 13,808,232천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고금관리법 제12조 제1항·제2항,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,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40명)
38. 대학 명의 계좌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 명의 계좌를 휴면계좌로 방치(48개, 합계 516,015원) 및 임의단체 명의 계좌를 대학 명의로 개설·관리(4개, 합계 9,982,862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13조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5조 제1항·제2항, 제8조 제3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 명의 48개 휴면 계좌는 해지하여 잔고 (합계 516,669원 '18528기준)는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고, -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협의회 등 임의단체가 대학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바람
39. 여비 중복 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같은 날짜, 같은 장소 출장 건에 대해 출장여비 중복 수령(3명, 299,600원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, 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 운영 지침,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299,6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
40. 근무지내 출장 여비 초과 수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 근무지내 출장여비 상한액 초과 수령(9명, 90,000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주의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 합계 90,00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 align="center">【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(인사혁신처 예규, 2015~2018)】</p>	<p>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
<p>【산단·연구비】</p>		
<p>41. 연구비 부당 수령 등</p>	<p>○ 既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연구비 20,000천원을 지원받고, 제자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하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</p> <p align="center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제63조, 부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, 부경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,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8조, 제10조】</p>	<p>○ 경징계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당 수령한 연구비 10,000천원을 교수 000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 <p>○ 경징계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당 수령한 연구비 10,000천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 <p>○ 중징계(1명) (징계시효 도과로 '경고')</p>
<p>42. 여비 과다 수령</p>	<p>○ 자가 숙박하고도 친지 숙박한 것처럼 하거나, 실제 공무수행과 무관한 일수를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여비 과다 수령(16건, 합계 689,540원)</p> <p align="center">【공무원 여비규정 제5조,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,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, 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21조】</p>	<p>○ 경고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적정하게 수령한 여비 합계 689,540원을 교수 000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</p>
<p>43. 산업자문 임의수행</p>	<p>○ 산학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교수 본인 명의로 산업자문계약 체결(2건, 40,000천원)</p> <p align="center">【국가공무원법 제64조,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</p>	<p>○ 경고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산학협력단에 분배되어야 할 산업자문 실시료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규정 제22조의3,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 지침 제4조, 제5조】	8,000천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납부받아 신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44.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매 부적정	○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 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39,224,359원의 연구비 낭비 【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, 부경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제6조,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(부경대학교)】	○ 기관주의 ○ 통보 -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'000' 등 단가계약 업체 3개로부터 단가계약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7,250,081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
45. 학회 참가비 집행 부적정	○ 연구활동비 중 학회활동의 경우 국내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됨에도, 국외(태국)에서 개최된 학회 참가비 655,384원을 연구과제 카드로 결제 【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3조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】	○ 주의(1명) ○ 시정(회수) - 연구활동비로 집행된 국외 학회 참가비 655,384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
46. 겸직 未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	○ 총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학과 조교의 연구보조원 참여(11명, 8개 연구과제) 【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,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·제2항】	○ 기관주의
47.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	○ 직근 상급자와 상담 없이 가족의 연구보조원 참여(6명, 14개 연구과제) 【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, 부경대학교 배우자·직계가족 등의 연구참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】	○ 경고(6명)
48. 교내 연구과제 참여 제한자 연구비 지원	○ 징계처분 등으로 교내 연구과제 참여 제한을 받은 교원 2명이 신청한 3개 연구과제를 교내	○ 경고(5명) ○ 주의(5명)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>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 지급(40,000천원)</p> <p>【부경대학교 연구관리 규정 제20조,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지원계획(2015~2018)】</p>	
<p>49. 우수논문포상금 지급 부적정</p>	<p>○ 교내 자율창의학습 연구지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자체규정을 위반하여, 교원 5명이 교내 자율창의 학술연구 지원 발표 논문에 대해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(3,000천원)</p> <p>【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 지침 제7조, 부경대학교 우수논문 및 단행본 포상금 지급계획(2015~2018, 학술진흥부)】</p>	<p>○ 주의(9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부적정하게 수령한 우수논문포상금 합계 3,000천원을 000 등 관련자 5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<p>50. 회의비 부당집행</p>	<p>○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했음에도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증빙자료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의비 부당집행(460건, 30,742,310원)</p>	<p>○ 기관주의</p> <p>○ 중징계(1명)</p> <p>○ 시정(회수)</p> <p>- 연구비 법인카드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합계 30,742,310원을 교수 000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 <p><별도조치></p> <p>○ 통보(산학협력정책과)</p> <p>-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</p> <p>○ 통보(한국에너지기술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	<p align="center">【국가공무원법 제56조,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, 계산증명규칙 제8조,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】</p>	<p>평가원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)</p> <p>-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</p> <p align="center"><별도조치></p> <p>◦ 고발</p>
<p>51. 직무발명 개인 명의 특허 출원. 등록 부적정</p>	<p>◦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·등록</p> <p align="center">【발명진흥법 제10조, 제12조,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, 제3조, 제11조】</p>	<p>◦ 주의(4명)</p> <p>◦ 시정</p> <p>- 개인 명의로 등록된 4건의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</p>
<p>52. 교내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지연 제출</p>	<p>◦ 교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未제출(13명, 13개 연구과제) 및 지연제출(50명, 60개 연구과제)</p> <p align="center">【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제8조, 제9조, 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지침 제12조, 제20조】</p>	<p>◦ 경고(13명)</p> <p>◦ 주의(43명)</p> <p>◦ 시정(회수)</p> <p>-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수 000 등 13명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109,5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</p>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53. 국가연구개발과제 간접비 징수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간접비 징수 계상기준보다 낮게 계상하여 간접비 징수(157개 연구과제, 579,238천원) <p>【부경대학교 간접비 관리 운영 지침 제4조, 제6조, 제7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관경고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간접비는 「부경대학교 간접비 관리 운영 지침」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기 바람
54. 물품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존재하지 않는 29점의 물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 보고 ○ 교직원 8명이 23점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물품관리관에게 未고지 ○ 교수 11명이 12점의 물품을 물품관리관의 출납 명령 없이 무단 반출 사용 <p>【물품관리법 제19조, 제26조, 제30조, 제31조, 제45조,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,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9명) ○ 주의(11명)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의 실제현황과 물품대장이 일치되도록 물품을 관리하고, 분실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<별도조치> ○ 통보(운영지원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관리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
【시설】		
55.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문공사 4건을 해당 건설업 未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<p>【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, 제9조 제1항,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고(3명) ○ 주의(3명) <별도조치> ○ 통보(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재)부경대학교발전기금 소속 000, 000을 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<별도조치> ○ 고발

지 적 건 명	지 적 내 용	처 분 (안)
56.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해취약시설로 지정된 교내 운동부 합숙소에 대해 정기점검 未 실시 및 관리카드 未 작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(교육부, '14.2월), 2018년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(교육부, '18.1.22.)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취약시설 점검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
57. 시설공사 감독 및 감사업무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해 설계 변경 또는 재시공 조치 없이 준공처리, 6,294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지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14조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6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 시공 6건 중 금속공사 공종 등 4건의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6,079천원(1,723+1,225+1,237+1,894)을 00건설(주) 등 시공업체(4개)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고, 나머지 기계장비 설치공사 공종 등 2건은 (주)0000로 하여금 재사공도 록 조치하기 바람
58.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4건의 안전관리비 4,121천원, 공사 3건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2,509천원을 감액 정산·조정 없이 준공 처리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,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,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94조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(3명) ○ 시정(회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액정산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4,121천원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2,509천원 합계 6,630천원을 00건설(주) 등 시공업체(7개)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